

11면 7번 문제 지문중 오타수정

- 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79면 119번 ㉔지문 해설추가

- ㉔ (X) : 장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방적 정당방위가 예외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다.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흥기나 그 밖의 위협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85면 124번 문제수정

124.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9면 128. 해설① 오타수정

- ① (O) : 이분설 중 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에서는 우월적이익을 보전한 행위는 22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동가치적 법익을 보전한 피난행위는 근거를 면책적 긴급피난(책임조각)으로 본다.

198면 138번

정답 ③④로 변경

- ③ (X)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더라도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합] 2022.03.24. 2017도18272). 출제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2개가 되었다.

353면 284번 ㉔지문에서 간통죄 삭제

- ㉔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간통죄~~) 도박죄, 아동학사죄, 부녀매매죄, 배임수증재죄 등이 있다.

393면 318번

지문③과 해설 ㉔변경

③ ○ × × ×

㉔ (×) 정범의 행위가 교사 내용을 초과한 경우 중 질적 초과이다. 2020.5.19.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죄의 경우에도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교사자는 강간죄의 예비·음모의 죄책을 진다.

430면 354번 문제지문의 내용추가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지문변경함>

㉔ **중증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한 후,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

496면 21번 해설 상세히 추가

① (○) :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한 경우, 비록 당시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된 내용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위반죄에 비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협의 정도 및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죄에 관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검찰에 의한 보강수사와 추궁에 따라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부터 시인한 3,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자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판 2004.06.24. 2004도2003).

517면 40번 ㉑지문 이해의 편의를 위해 수정

㉑ **금고이상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서**(수정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06면 65면 전원합의체 판결반영하여 ①지문 및 ①해설변경

지문 변경

- ①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위계간음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변경

- ① (X)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판[전합] 2020.8. 27. 2015도9436).

666면 121면 ㉠ 해설변경

- ㉠ (X)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6세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6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674면 129면

정답 ②③

- ③ (X)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합] 2022.03.24. 2017도18272). 출제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2개가 됨

695면 150면 해설판례번호 변경

- ④ (O) : **대판 2014.02.21. 2013도14139**

736면 189면 해설 판례번호 변경

- ⑤ (X)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의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대판 1992.01.27. 91도2727**).

763면 214번 정답 및 해설변경

정답 ③④로 변경

- ③ (○) : 종래 판례는 사기죄 이외에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2020.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으므로 이제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764면 215번 정답 및 해설변경

정답 ②④로 변경

- ② (○) :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97.1.21. 96도2715).

797면 245번 문제지문 수정

-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817면 정답 및 해설변경

정답 없음

- ③ (×)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전합] 2022.06.23. 2017도3829). ⇨ 최근 판례변경으로 정답없음으로 변경

877면 320번 해설변경

- ③ (×) 원판결은 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 하에서 한 것으로 아니 본 원심이 공소범행 사실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 판단을 한 것은 옳다(대판 1979.09.11. 79도436).

982면 지문② 해설추가

②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4.10.15. 2004도3584).